

## 직원 연봉제에 관한 시행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41조(연봉제) 제3항 직원 연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이 규정은 연봉제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(계약기간)** 연봉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평정기간)**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평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고, 이를 익년 연봉계약에 적용한다.

**제5조(비밀유지 의무)** ①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.

② 연봉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직원의 연봉계약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체의 자료를 유출 또는 공개할 수 없다.

**제6조(급여체계)** 연봉 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기본급, 직무수당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포괄적 임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정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연봉의 책정)** ① 직원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배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연봉 배정 비율	비고
S	20%	최대 인상 비율임
A	10%	최대 인상 비율임
B	동결	

② 1항에도 불구하고,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 배정 비율은 매년 본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평가등급 및 인원 배분)** 직원 평가 결과에 따른 인원배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3단계 차등적용 한다. 단, 인원배분율은 매년 본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구분	인원배분율	비고
S	5%	탁월
A	10%	우수
B	85%	보통

**제9조(급여의 지급)** 개인별로 책정된 기본연봉은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.

**제10조(연봉결정 통지 및 계약 체결)** 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원별 연봉액이 결정되면 총무처장은 해당 직원에게 연봉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연봉계약은 <별표1>의 서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1조(연봉조정원칙)** 매년 임금인상 자원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평가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연봉조정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